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10(목) 10:00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5. 3. 28.
라. 회부일자 : 2025. 3. 28.

2. 제안이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76,986,391천원(일반 8,070,78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B)	기정액			1회추경 (안) (B)	비고
			소계 (A)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76,986,391	768,915,603	764,927,053	3,988,550	8,070,788	
일 반 회 계		754,545,611	746,474,823	743,148,273	3,326,550	8,070,788	
특 별 회 계		22,440,780	22,440,780	21,778,780	662,000	-	
	의료급여기금	634,164	634,164	634,164	-	-	
	주 차 장	21,806,616	21,806,616	21,144,616	662,000	-	

4. 문화환경국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문	화	75,812,232	74,762,982	1,049,250	1.40 %
문	화	24,778,235	24,419,605	358,630	1.47 %
청	소	47,567,753	47,228,953	338,800	0.72 %
환	경	2,592,271	2,592,271	0	0.00 %
부	동	873,973	522,153	351,820	67.38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1회 추경(안) ②
문화체육과											
				시 지정 유산 안내판 신설 정비	시 지정 유산 2개소에 안내판 3개 신설 정비(시70:구30)				8,250	0	8,250
				서울야외도서관 확산지원	(공모) 야외도서관 운영 4회 개최 도서구입 및 캠핑의자, 서가 등 운영 물품구매(시50:구50)				40,000	0	40,000
				독산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직영(5월), 위탁(6~12월)관련 운영경비 *전출금 반영				222,304	0	222,304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	직영 운영경비				88,076	0	88,076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재활용처리장 6개 시설 보수				338,800	0	338,800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관리	소송수행경비 100만원(262명)과 주거안전지원비 50만원(175명) 중 선택 지원				351,820	0	351,820

6. 검토의견

○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747억 6,298만원)에서
금회 10억 4,925만원이 증액된 총 758억 1,223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9.76%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문화체육과

기정예산(244억 1,960만원)에서 금회 3억 5,863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 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825만원 증액

서울야외도서관 확산지원 4,000만원 증액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2억 2,230만원 증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 8,807만원 증액

나. 청소행정과

기정예산(472억 2,895만원)에서 금회 3억 3,880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 3억 3,880만원 증액

다. 부동산정보과

기정예산(5억 2,215만원)에서 금회 3억 5,182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3억 5,182만원 증액

○ 문화환경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매칭분 반영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 기준 등에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